

## □ 채용결격사유 및 채용취소사유

<p>☑ 채용결격 사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li> <li>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</li> <li>●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</li> <li>●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li> <li>●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</li> <li>●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</li> <li>● 전직(前職)으로부터 징계면직된 자로서 동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</li> <li>● 전직(前職)으로부터 정직조치를 받은 자로서 그 징계일로부터 정직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</li> <li>●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이탈 사실이 있는 자</li> <li>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'비위면직자 등'에 해당하여 동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</li> <li>● 전직(前職)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·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</li> <li>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●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전직(前職)에서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li> <li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</li> </ul> </li> </ul>
<p>☑ 채용취소 사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원서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</li> <li>●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</li> <li>● 신체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</li> <li>●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합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</li> <li>●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부패행위를 말한다)의 감사·조사 업무 관련 기관에 의해 부정합격자임이 발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정합격자임이 판명된 경우</li> </ul>